

##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

기관명:

주소:

1. 지정번호: 손실액산출기관지정 제 호

2. 대표자:

3. 조사자 현황:

4. 지정기간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수산업법 시행령」 제55조·별표 10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